

■ 검증사항

- [졸업자 합계(남, 여)]** : 졸업자는 2022년 <5-가>, 2023년 <5-나>의 졸업자 합계(남, 여)와 반드시 같아야 함
[진학자 합계(남, 여)] : 진학자는 2023년 <5-나>의 진학자 합계(남, 여)와 반드시 같아야 함

■ 작성지침

- [학과(전공)]** :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
[졸업자] :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
 ※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,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,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
[취업자] :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자 중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해외취업자, 농림어업종사자, 개인창업활동 종사자, 1인 창(사)업자, 프리랜서
[건강보험 직장가입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건강보험DB를 통해 확인)
 ※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대학의 재정(교비, 산학협력단 회계 및 정부재정지원금 등 대학의 모든 회계를 포함)으로 인건비(4대 보험료 포함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*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
 * 졸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, 또는 대학이 졸업자의 인건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함
 ※ 비상근근로자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부적격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
[해외취업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,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
[농림어업종사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
 ※ 농림어업종사자 인정기준: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 의거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되거나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농업인용),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어업인용), 어업허가내역서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 자료,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한 자
[개인창업활동 종사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
[1인 창(사)업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22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, 2022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85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또는 2022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‘초기창업패키지 사업’(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)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
[프리랜서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2022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5,743,32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
[진학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
 ※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2022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
 ※ 해외 어학연수자,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(예: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, 평생교육원 등) 입학자는 제외
[입대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군 입대자
[취업불가능자]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수형자, 사망자, 해외이민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

【외국인유학생】 :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(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)으로 진학, 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이 졸업자 중 외국인 학생 수를 입력

【제외인정자】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(의료급여 수급자,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, 항공공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,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 졸업자, WFK사업 참여자)

【기타】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취업, 진학, 입대, 취업불가능, 미상,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【미상】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

【취업률(%)】 : [(건강보험 직장가입자+해외취업자+농림어업종사자+개인창업활동 종사자+1인(창)사업자+프리랜서)/(졸업자-(진학자+입대자+취업불가능자+외국인유학생+제외인정자))] × 100

【입학당시 기취업자】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

【교내취업자】 :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에 1년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(2022년: 1,914,440원, 2023년: 2,010,580원)를 받는 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‘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’ 참여자

※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는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, 사직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

【유지취업률(%)】 : 취업통계 조사기준일(2022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(수시(4회)), (2022. 12. 31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추가조사 시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/ (2022. 12. 31.) 건강보험 직장가입자) × 100

$$- 1차 유지취업률 = \frac{\text{'22년 12월·'23년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{\text{'22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 \times 100$$

$$- 2차 유지취업률 = \frac{\text{'22년 12월·'23년 3월·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{\text{'22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 \times 100$$

$$- 3차 유지취업률 = \frac{\text{'22년 12월·'23년 3월·6월·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{\text{'22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 \times 100$$

$$- 4차 유지취업률 = \frac{\text{'22년 12월·'23년 3월·6월·9월·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{\text{'22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} \times 100$$

※ 학과명칭 변경, 신설, 폐과,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

■ 참고사항

○ 졸업생의 취업 현황(일반대학원)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(한국교육개발원, 2022. 12. 31. 기준)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